

# 「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건설방재과장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 개정(2011.06.27)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매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
  - 기금사용 용도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